

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방안(요약)

1 추진 배경

-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품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'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'를 국정과제로 추진

< 국정과제 68 : 안심 먹거리, 건강한 생활환경 - 자율 안전정보 공개 도입(~'25년) >

- ▷ 제품내 원료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가 많은 물질정보를 비교할 필요 없이 등급 표시만으로 유해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업 자율적 참여 제도

- ☞ ①소비자는 안전성 정보 쉽게 인지, ②기업은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강화 및 마케팅 차별화 등 기회 활용

2 추진 경과

-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('15년~), 「화학제품안전법」('19년~)에 따라, 세정제,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* 안전 관리 中
 - 안전기준(함유금지·함량제한물질 등) 준수 여부를 공인 시험기관에 확인받고,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·판매 가능

* 관리 품목 : ('15년 최초) 세정제, 세탁세제 등 8개 → ('23년) 43개

- '17년부터 기업(38개)-시민사회(2개)-정부가 함께 자발적 협약 체결
 - 기업은 제품 내 모든 원료 성분 공개('17~'23년, 1,801개 제품) → 정부는 원료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업에 제공('19~'23년, 2,220개)
 - 기업 스스로 유해 화학물질 저감 또는 대체 → 시민사회의 엄격한 심사로 '우수 생활화학제품' 선정('21.7~'23, 59개 제품)

한계

- ▶ 현재 쉐성분 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, 소비자가 직접 정보 검색을 통해 물질별 유해성 정보 확인 → 불편하고 이해 어려움
- ▶ 우수제품 수가 정체되고, 선정되는 품목도 제한적

- ☞ 보다 '알기 쉽게', '더 많은' 정보 공개를 위해 기업·시민사회·정부가 함께 T/F를 구성하여 안전정보제 도입 논의('23년)

※ 기업·소비자 대상 설문조사('23.5~8월) 결과 도입 필요성 공감(기업 72%, 소비자 78%)

3 세부 추진 방안

① 공개 방식 및 내용

①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 + 평가물질 수 확대

- 정보공개 대상 품목을 '23년 43개 → '27년 50개로 확대
-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를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를 확대('23년 2,220개 → '24년 3,000개)

② 안전성 평가 정보 대국민 공개 + 추가정보 제공

- 배합비 0.1%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(단, 규제물질 필수 표기), 원료 유해성 분석·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 표시
-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(픽토그램 등) 제공

※ '24년 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 → '25년 이후 제품 QR 표시 및 모바일 앱 연계 공개

< 예시 : ○○세정제 >

< ① 전체 원료(25개) 성분 구성 >



< ② 성분별(25개) 등급 >

나뭇잎 개수로 표시		☞ 나뭇잎 개수 의미	
정제수/ 트리아세틴/ 프로필렌글리콜/ 차아염소산나트륨/ ⋮		4개	유해 우려 없음
		3개	유해 우려 낮음
		2개	용도,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
		1개	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

< ③ 사용상 주의 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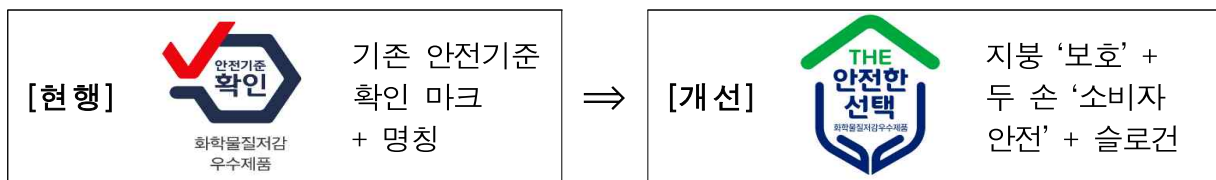


② 시범 적용 및 가이드라인 마련('24년~)

- ① 기존 자발적 협약('17~'23년) → 「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약체」로 상설기구화(+ 다국적 기업·수입사 등)하여 이행 체계 강화(~'24.11월)
- ② 이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범 공개('24.11월 공개) → 시범 공개 결과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본격 추진('25년~)

③ 본격 시행 및 확산('25년~)

- ① '우수제품 심사 조건에 정보 공개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반영, 우수제품 선정 수도 지속 확대('23년 59개 → '25년 100개)
 - 우수제품 활성화를 위해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로고 개선
- ※ 현행 로고에 대해, 기업은 차별성 모호, 소비자는 인지 곤란 등으로 개선 요구



- ② 안전성 향상 기술 컨설팅, 해외 수출국별 인증·등록 지원, 우수 대기업과 중·소기업 파트너십 체결·지원 등 참여기업 지원 강화